2 지역자율형바우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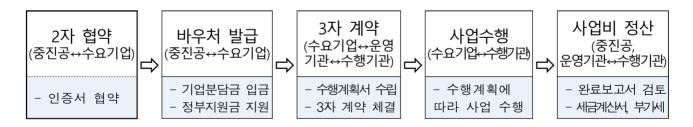
- (지원대상)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별공고 상의 모집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가운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 -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주업종이 제조업*인 기업
 - 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한국표준산업분류 "C" 해당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(평균매출액등의 산정) 기준 적용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
- (지원규모) 약 20억원 내외
 - *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(지원내용)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 3가지 분야,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
 -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,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
 - * 다만, 융복합컨설팅은 먼저 협업 승인을 득한 이후 기술지원 및 마케팅 분야 신청 가능

[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]

분야	프로그램	서비스 지원내용	
컨설팅	경영기술 전략	- 생산관리, 품질관리, 기술사업화 전략, 노무, 인사, 조직, 세무, 재무, 회계, 경영전략, 구조개선, 영업전략, 융복합 등 - 노동법 대응(최저임금제, 근로시간 대응 등)	
기술 지원	AX·DX 추진전략	- 스마트공장 진단 및 AX·DX실용화, 활성화,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	15
	시제품 제작	디자인 목업, 제품 형상 구현(샘플금형, 비금형, 정밀 미세가공, 섬유, 식품)	30
	시스템 및 시설구축	생산관리 정보화, 기술유출방지 시스템, 연구시설, 스마트공장 구축, 공정설계(생산공정, 생산라인),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	20
	IP기반 기술사업화	-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- 지식재산권(IP) 획득 지원 (분쟁대응 포함) - 지재권 진단, 신제품 기획, 문제해결, 제품고도화	15

분야	프로그램	서비스 지원내용	
	제품시험인증 연구장비활용	- 하드웨어(성능, 안전성, 신뢰성, 조달품 적합, 유해물질 분석, 자가품질검사), 소프트웨어(보안해킹, 웹/앱) 등 시험·인증·연구장비활용 -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	15
마케팅	디자인 개선	제품 디자인, 포장디자인 등	15
	브랜드 지원	CI디자인개발, BI개발, 브랜드스토리, 브랜드슬로건 등	20
	홍보물 제작	기업·제품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(브로셔, 카달로그, 홍보영상, 홈페이지 등)	20
	광고 지원	온·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 (온라인 광고, 방송, 신문, 옥외광고, 교통매체 등)	20

- *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,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**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(mssmiv.com)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
- ***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신청·지원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50백만원
 - (바우처 이용절차)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→ ② 바우처 발급 →
 ③ 3자 계약 → ④ 사업수행 →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
 *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(사업비 정산 시)



○ **(보조율)**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(45 ~ 85%)

평균 매출액	정부지원 비율	자기부담 비율
3억원 이하	85%	15%
3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65%	35%
10억원 초과 ~ 50억원 이하	55%	45%
50억원 초과 ~120억원 이하	45%	55%

○ (바우처 사용기간) '25년 11월말까지 최종결과물 제출 ※ 사용기간 엄수

○ (신청서류)

연번	구분	서류명	내용
1		사업 신청서	온라인 작성
2		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	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
3	필수 ¹⁾	사업계획서	[별첨1]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
4		사업자등록증명원	국세청 확인본
(5)		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	국세청 확인본
6	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기업 및 대표자
7		레전드50+ 참여기업 확인서 *지역성장형 바우처 신청기업 제출 필수	지방자치단체 발급본 (서식3 참조)
8		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	재무제표 미제출 업체
9		지식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	온라인 작성
10	해당 시	●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, ❷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③유연근무제 활용기업 ④진로제시컨설팅 처방기업 ⑤중소기업밀집지역 '주의·심각' 단계 입주기업(서식4) (⑤.②.③.⑤.⑩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음)	공통우대 가점 사항 ²⁾

- 1)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
- 2) ①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, ❷협업승인 기업, ③ 유연근무제 활용기업, ④ 재기바우처 진로제시컨설팅 처방기업, ⑤ 중소기업 밀집지역 '주의·심각' 단계 입주기업, ⑥ 원자 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(석유정제, 화학, 고무 플라스틱, 비금속 광물, 1차금속 제조업), ✔ 지역 현신공모사업 선정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, ⑥ 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, ⑨ 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수진기업, ⑩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소재 기업

○ (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)

- (①~②) 신청서, 신용정보동의서 : 혁신바우처플랫폼(http://www.mssmiv.com)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
- (③, ⑥) 사업계획서,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: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
- (④, ⑤, ⑦)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* 활용 제출
 - *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(mssmiv.com) 공지되어 있으며, **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**
- **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·개인('21년, '22년, '23년) 제출

- (⑧) 각 지식재산권 및 인증서 사본 업로드(유효기간 등 확인)
 - * 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,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(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)
- **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
- ***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
- (⑨) 공고문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
 - * 우대가점 연번⑩(●~⑥)는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
- (평가절차) 서면심사 → 진단·평가 → 지역별위원회 → 최종 선정
 - (서면심사) 신청요건,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
 - (진단·평가)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
 - (지역별위원회) 중기부,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,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

3. 문 의 처

구분	전화
지역성장형바우처	1357, 1811-3655
지역자율형바우처	(055-751-9847, 9851)
중소기업 지원플랫폼(민원증명서류)	02-3771-1100

* [별첨5] 중진공 지역본·지부 소재지 및 연락처 참조